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도로점용(굴착·복구) 신청수수료 세입처리 지연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과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△△과는 「도로법」 및 「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신청 수수료 징수·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도로법」 제61조에 따라 공작물·물건, 그 밖의 시설을 신설·개축·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「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징수하되,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「서울특별시 도로굴착·복구시스템 운영지침(서울시 및 자치구)」 제9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굴착복구시스템으로 신청된 도로점용(굴착·허가)허가자는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접수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월 단위로 내역을 확인한 후 익월 5일 까지 대체방식으로 세입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△△과는 아래 표와 같이 도로굴착복구시스템으로 신청된 도로점용(굴착·복구) 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허가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최소 8일에서 최대 30일 지연하여 세입조치한 사실이 있다.

[표] 도로점용(굴착·복구) 신청 수수료 세입처리 지연 내역

연번	과세년월	금액	과세일자	지적사항
1	2023년 2월분	19,000	2023.4.19.	세입처리 지연(30일)
2	2023년 3월분	29,000	2023.4.19.	세입처리 지연(8일)
3	2024년 2월분	12,000	2024.3.19.	세입처리 지연(12일)
4	2024년 5월분	36,000 (6월분 포함)	2024.7.1.	세입처리 지연(15일)

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 5. 조치할 사항

#### △△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도로점용 허가 신청 수수료 징수 및 세입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